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2. 15 선고 2020나2719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대중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현

담당변호사 박종학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동수원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성호, 이요흠

변 론 종 결 2021. 12. 14.

판 결 선 고 2022. 2. 15.

제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4. 21. 선고 2020가단5000066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여주시 Q 임야 695㎡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9. 12. 30. 접수

제49338호로 마친, 위 R 임야 1,653㎡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9. 12. 30. 접수 제49331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종중은 X파 D 등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다.

나. 원고 종중 소유이던 여주시 Q 임야 695㎡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2008. 10.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9. 12. 30. 접수 제49338호의, R 임야 1,653㎡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2008. 10.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9. 12. 30. 접수 제49331호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여주시 Q 임야 695㎡ 및 R 임야 1,653㎡를 ‘이 사건 각 임야’라 하고,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Y이 원고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종중의 2019. 11. 5.자 정기총회에서 대표자회장으로 393표를 얻은 Y을 선출하는 결의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종중의 주장

원고 종중의 정관에 의하면, 종중재산의 처분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하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이사회 의결 후 총회 참석인원 100명 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당시 원고 종중의 대표로 있던 S는 이사회 의결 및 총회 승인을 거치지 않고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하여 아들인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 종중의 위 주장은 정관이 정한 이사회 의결 및 총회 승인을 거치지 않고 이 사건 각 임야가 처분되었다는 것인데, 오히려 갑 제22, 24호증, 을 제12호증의 8, 을 제13, 16, 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8. 10. 18. 이사총회, 2008. 11. 2. 종중총회(W이 종중 대표로 선출되었다)에서 T1) 및 R2)에 대한 매각 결의 내지 매각추인 결의가 이루어졌고 그후 2009. 11. 17. 정기총회에서 이 사건 각 임야의 분할 및 등기이전에 관한 안건이 의결되었으며 그 결과 2009. 12. 30.자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후로도 2010. 2. 27. 이사회에서 2008. 11. 2. 종중총회 결의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결의를 하고, 2010. 11. 12. 및 2011. 10. 28. 각 정기총회에서 T 및 R 매각에 관한 결의를 하는 등 원고 종중은 이 사건 각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 및 등기 이전을 결의하거나 추인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으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최은주, 판사 정 원, 판사 김유성

1) 여주시 Z 임야 중 일부가 T 임야 18,181㎡로 분할되었다가 U 임야 17,846㎡로 등록전환된 후 다시 U 임야 17,150㎡ 및 Q 임야 695㎡로 분할되었다.

2) 여주시 AA 임야 중 일부가 R 임야 1,653㎡로 분할되었다.

